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21호 2019. 10. 18.(금요일)

##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10호      하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3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9-166호    하천점용 변경허가 고시..... 37
- 하동군 고시 제2019-170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38
- 하동군 고시 제2019-172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산림환경연구원장) 40
- 하동군 고시 제2019-174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 고시(화목어업계장 김재\*)..... 42
- 하동군 고시 제2019-175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 고시(손승\*)..... 44
- 하동군 고시 제2019-17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46
- 하동군 고시 제2019-180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49
- 하동군 고시 제2019-181호    대도 창조적마을 만들기 시행계획 고시..... 67
- 하동군 고시 제2019-182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68
- 하동군 고시 제2019-183호    소하천점용 변경 허가 고시공고(김광\*)..... 69
- 하동군 고시 제2019-185호    원목계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고시..... 71
- 하동군 고시 제2019-186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 시행인가 및 고시..... 73
- 하동군 고시 제2019-18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75

## 입 법 예 고

- 하동군 공고 제2019-1101호    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 예고 77
- 하동군 공고 제2019-1102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9
- 하동군 공고 제2019-1103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8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 공 고

- 하동군 화개면 공고 제2019-26호 화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 103
- 하동군 공고 제2019-1065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고시 행정예고 ..... 108
- 하동군 공고 제2019-1076호 내수면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 109
- 하동군 공고 제2019-1079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110
- 하동군 공고 제2019-1092호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4차) 113
- 하동군 공고 제2019-1109호 지적재조가 읍원지구 실시계획 공람 공고 ..... 130
- 하동군 공고 제2019-1110호 지적재조사 목도지구 실시계획 변경 공람 공고 ..... 132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18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 1210 호

### 하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하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

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

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명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군수는 납세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세무조사가 곤란할 경우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세무조사에 관하여 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군수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를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군수는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군수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

선정 대상 건수가 5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구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도지사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군수는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군수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관련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군수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하동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발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4.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고용우수 중소기업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5조(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법 제76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는 장

부 및 그와 관련된 증명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명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2.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 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 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 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
- 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조사기간) 군수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서면조사의 경우 최종 자료 제출일을 의미한다) 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군수는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

하지 않으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 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4장 조사사무관리

제30조(조사계획수립) ① 군수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준비) ① 군수는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 실시) ① 군수는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오랫동안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끝내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군수와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세무조사 대상자
  - 2. 세무조사 기간 · 내용 · 추정세액 · 추정사유 · 불복내용 등
  -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 ③ 군수는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군수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 · 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41조제2항 관련)

##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 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다.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마. 조사공무원은 대외적으로 세무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납세자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

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다.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현장에 도착하면 조사 착수상황, 특이사항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공무원 증표를 제시하고 납세자 권리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나. 범칙사건조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일시보관 할 수 있다.
-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라.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

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 마.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사.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아.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 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복명을 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결정 전 조사내용 통지 전까지 조사 적출내용 등 조사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 마.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기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지방세 서면세무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관리현장 제공)

	범인유형	주요 목적사업
<p>○ 범 인 명 : (인)</p> <p>○ 대 표 자 : (남 / 여)</p> <p>○ 범인소재지 :</p> <p>○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p> <p>○ 작성자 : 근무부서 :   성   명 :   (인)</p> <p>          진   화 :            팩   스 :</p> <p>○ 제출일자 :   년   월   일</p>	<p>제조업 (    )</p> <p>건설업 (    )</p> <p>판매업 (    )</p> <p>문송업 (    )</p> <p>기 타 (    )</p>	

하동군수 귀하

## 지방세 서면세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  
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맞춰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V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사대상 년도가 2년 이상이면 각 사업년도별로 각각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 불성실 신고 법인은 직접세무조사를 하게 되오니 정확히 작성하여 기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기획행정국 재정관리과 (담당자)  
우편번호 : 52333

※ 문의사항 전화 : (055) 880-2272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그 밖의 법인 모두 해당)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 식 목 차

1.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1.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하동군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연도	사업장명	소재지	소유 구분	사업개시일	건축물현황		과세제외 면적				과세면적 ㉔(㉑-㉒)	당정세액 (㉑)	기납부세액 (㉑)	납부일자	차인세액 ㉑(㉑-㉒)
					사용용도	연면적 (㉑)	기숙사	구내식당	기타	소계 (㉑)					

※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작성요령

- 사업장명: 사업소 사용용도별로 구분 관리하는 명칭을 기재
- 소유구분: 소유여부는 소유와 임차로 구분하여 적고,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
- 사용용도: 해당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이 실제 사용되는 구체적인 용도(예시: 사무실, 기계실, 체육관, 휴게실 등)를 기재
-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함)의 연면적을 기재, 다만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기재
- 과세제외 면적: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총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 목욕실·탈의실, 구내 이발소 및 탄약고)의 면적을 구분하여 기재

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하동군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구 분 월 별	①급여총액			②과세제외 급여액		③종업원수			과세표준 C= (B-④)	④ 공제액 (A)	여 지 급 액	*최간 1년평균 월소득	⑤산출세액 E= C-④  X(5/1000)	기납부 세액	납부 일차
	⑤ 소계	급여 상여	합계	⑥ 소계	계	상시	수시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정산)															

※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은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단위 : 원)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작성요령

- 급여총액: 신고월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
- 과세제외급여액: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액
- 종업원 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따른 월 통상인원[해당 월의 상시고용 종업원수 + (해당 월의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해당 월의 일수)]을 산출하여 기재
  - 급여의 지급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은 수시고용 종업원이 근무한 일수의 합계를 의미함  
(예시) 수시고용 종업원 3명이 각 10일, 15일, 20일씩 근무한 경우:  $(10 \times 1 + 15 \times 1 + 20 \times 1) = 4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주민세종업원분을 감면 받으려는 법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5를 적용하여 신고
-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신고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12로 나눈 값을 기재. 이 경우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을 날이 15일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수는 제외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소재지	하등군	읍면		로·길	사업장명	(단위 : 원)					
			소	대			신용지방 소득세	기타	합 계 (과세표준액)	기납부 세액	납부 일자	
구분 월별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연금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합 계 (과세표준액)	신용지방 소득세	기납부 세액	납부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정산												
합계												

※ 사업장이 많은 경우 사업장별로 각 별도 작성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참조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 소득세 납부액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종류[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 및 가감세액(조정액)]

○ 산출 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세율



[별지 제2호서식]

# 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남 / 여)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하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해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

영 치 사 유						
영 치 기 관						
영 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						

○ 붙임 : 영치목록

년 월 일

## 하 동 군 수

직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 압수·영치목록

일련 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남/여)	소 유 자 (남/여)	비고

※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남 / 여)

위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하동군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7조에 따라 붙임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 치 사 유						
예 치 기 관						
예 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예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서명날인 또는 거부사유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직인
----

[별지 제5호 서식]

# 예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남/여)	소유자 (남/여)	비고

하동군 고시 2019-166호

# 하 천 점 용 ( 변 경 ) 허 가 고 시

주 소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50(하동읍 428-3)		
성명(법인명)	하동청실회 조종*		
* 하 천 명 칭	섬진강	하천등급	국가하천
점 용 장 소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7, 443-18, 443-10, 440-10, 440-9, 440-5		
점 용 면 적	2,250㎡		
최 초 허 가 일	2019년 9월 17일		
점 용 기 간	2019. 9. 27.~ 2019. 9. 29.(3일간)		

「하천법」 제33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고시 제2019 -170호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24.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너뱅이길 35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 )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너뱅이길 30 외(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3 )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44-9(1건)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9.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25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너뱅이길 35	2019 0924		2019 0627	도로가 위치한 지명 사용	
건물 번호 변경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05-1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너뱅이길 30	2019 0924	새로운 도로 (너뱅이길) 준공	2019 0627	도로가 위치한 지명 사용	하 동 역 사
건물 번호 변경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05-1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너뱅이길 13-3	2019 0924	새로운 도로 (너뱅이길) 준공	2019 0627	도로가 위치한 지명 사용	
건물 번호 변경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05-2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너뱅이길 13-15	2019 0924	새로운 도로 (너뱅이길) 준공	2019 0627	도로가 위치한 지명 사용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고시(공고)

하동군 고시 제2019-172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장	주소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055-254-3925)
소하천명		목계천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749(천) *인접 : 청암면 목계리 1305(대)		
	면적	296.0m <sup>2</sup>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m <sup>2</sup>
	기간	영구 (*공사기간 : 2019. 9. ~ 2019. 11.)		
	목적 및 사유	토지의 점용		

붙임 허가조건 1부.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허 가 조 건

1. 제출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하고, 허가시설물의 다른 시설물이 추가설치 되거나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만료 1개월 전까지 하천점용 연장 허가신청 하여야 합니다.)
2. 본 점용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피허가자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피 허 가자 본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점용 및 공작물 설치로 편입되는 하천구역내의 사유 토지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또는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4.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하천법에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협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않되** 며, 민원발생시 점용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접지역이 하천임을 감안하여 오폐수 유입방지를 위해 점 용지 유 지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등 국가 및 공익상의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당해 필지의 공작물(건물, 기타 축조물)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 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8. 제방 인접 공작물 설치 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하천법 95조에 의거 하천 점용 허가 취소 및 고발 조치 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3.3.23>

### 하 천 점 용 허 가 증

하동군 고시 제2019-174호

주 소	하동군 고전면 공설운동장로 739		
성명(법인명)	화목어업계장 김재*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하천명칭	횡천강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붙임참조		
점용면적	33,000㎡		
최초허가일	2019. 9. 3.		
점용기간	2019년 9월 3일 ~ 2024년 9월 3일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5 의거)		
허가조건	별도 붙임과 같음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9월 3일

하동군수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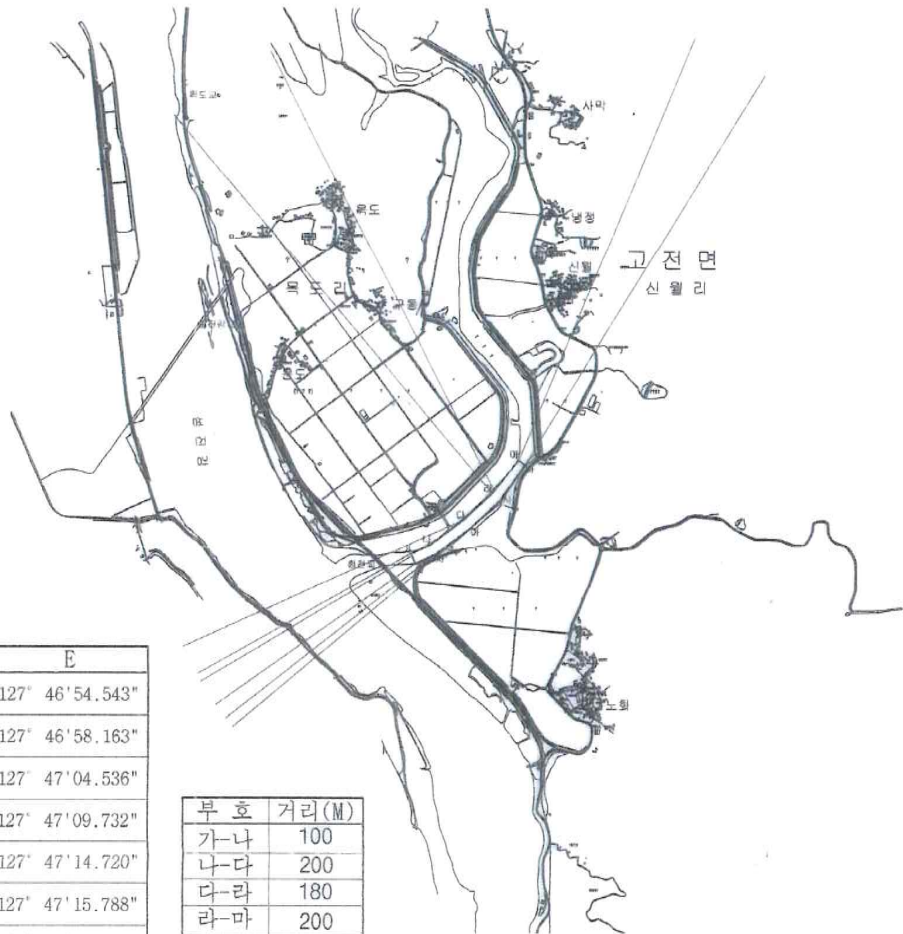
##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경남 하동 내수면양식 어업면허 제

호

축척: 1/25,000

1. 어업의 종류 : 내수면양식어업
2. 양식방법 : 재첩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황전천 지선
4. 기점(보조기점):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황전천 기점 (▲ 34° 01'50.234" / 127° 47'11.293")
5. 수면의 구역: 아래 도면에서(가)(나)-(자)(차)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어장의 면적 : 33,000㎡ ( 3.3ha )



구분	N	E
가	35° 01'42.679"	127° 46'54.543"
나	35° 01'43.969"	127° 46'58.163"
다	35° 01'47.794"	127° 47'04.536"
라	35° 01'51.774"	127° 47'09.732"
마	35° 01'56.802"	127° 47'14.720"
바	35° 01'56.082"	127° 47'15.788"
사	35° 01'50.587"	127° 47'11.077"
아	35° 01'46.483"	127° 47'05.699"
자	35° 01'42.480"	127° 46'58.947"
차	35° 01'41.173"	127° 46'55.337"

부호	거리(M)
가-나	100
나-다	200
다-라	180
라-마	200
마-바	35
바-사	207
사-아	186
아-자	211
자-차	100
차-가	50

인공위성(GPS)해상측량부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성길 306  
 TEL : 055)864-5058, HP : 010-3627-0835  
 측지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윤준  
 (등록번호 : 88206050042)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3.3.23>

### 하 천 점 용 허 가 증

하동군 고시 제2019-175호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 111, 311동 301호		
성명(법인명)	손승*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하천명칭	횡천강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붙임참조		
점용면적	10,000㎡		
최초허가일	2019. 9. 3.		
점용기간	2019년 9월 3일 ~ 2024년 9월 3일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5 의거)		
허가조건	별도 붙임과 같음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9월 3일

**하동군수**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 허 가 조 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9 - 176호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30.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457-1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566-4 (1건)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9.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88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457-1	2019 0930		2009 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977, 97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564-1	2019 0930		2009 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128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434-24	2019 0930		2007 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428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230	2019 0930		2007 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성에 따라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30-4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277	2019 0930		2007 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부터 서쪽에 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30-4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277-1	2019 0930		2007 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부터 서쪽에 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167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 197-19	2019 0930		2009 0702	행정구역명(옥중+ 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42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62-10	2019 0930		2007 0618	진교의 연원(淵源) 을 적용하여 민다리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북방리 318-2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북방우회길 27-29	2019 0930		2008 0402	넓고 비옥한 평야를 상징한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지역 특성을 합성하여 북방우회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1214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상촌1길 38-34	2019 0930	2007 0618	북천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애치리 581-2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숙재1길 140	2019 0930	2009 0302	마을명에 일련번호방 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하동군 고시 제2019-180호

##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지적기준점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08일

## 하 동 군 수

### ■ 지적도근점 수정 (세계측지계 좌표값 설정 및 수정)

기준점 명칭	기준점 번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관측 (설치) 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지적도근점	1	하동읍 광평리 223-2	35-03-53.3241	127-44-48.7953	5.595	중부	274540.348	268128.856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4231.86	268055.08				지역
지적도근점	3	하동읍 광평리 438-2	35-03-52.4575	127-44-32.7205	12.862	중부	274510.598	267721.744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4202.60	267647.49				지역
지적도근점	6	하동읍 광평리 446-1	35-03-56.4210	127-44-26.0385	11.647	중부	274631.487	267551.523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4323.35	267477.21				지역
지적도근점	8	하동읍 읍내리 1493-3	35-04-02.1714	127-44-27.4887	10.864	중부	274808.975	267586.952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4500.91	267512.69				지역
지적도근점	11	하동읍 읍내리 1559	35-04-09.6172	127-44-26.4124	11.306	중부	275038.238	267557.978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4730.14	267483.64				지역
지적도근점	14	하동읍 읍내리 1563-19	35-04-28.9249	127-44-22.9399	11.316	중부	275632.613	267465.579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324.55	267391.26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관측 (설치) 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지적 도근점	24	하동읍 읍내리 209-2 2	35-04- 05.6710	127-44- 59.9076	4.763	중부	274922. 967	268407. 565	2019.07. 04.	철재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174614. 55	268333. 46				지역
지적 도근점	25	하동읍 읍내리 209-2 5	35-04- 03.9803	127-44- 58.5099	5.108	중부	274870. 596	268372. 542	2019.07. 04.	맨홀식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174562. 22	268298. 24				지역
지적 도근점	26	하동읍 비파리 773-1	35-03- 49.5681	127-45- 18.0494	4.332	중부	274430. 175	268870. 990	2019.07. 04.	맨홀식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174122. 02	268797. 04				지역
지적 도근점	27	하동읍 비파리 752-1	35-03- 52.6750	127-45- 13.6267	3.849	중부	274525. 077	268758. 200	2019.07. 04.	맨홀식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174216. 89	268684. 22				지역
지적 도근점	30	하동읍 광평리 451-1	35-03- 54.4430	127-44- 54.0384	5.426	중부	274575. 826	268261. 451	2019.07. 04.	맨홀식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174267. 43	268187. 66				지역
지적 도근점	31	하동읍 광평리 451-1	35-03- 52.0479	127-44- 53.3677	5.901	중부	274501. 885	268245. 009	2019.07. 04.	맨홀식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174193. 48	268171. 26				지역
지적 도근점	36	하동읍 광평리 4	35-03- 48.5278	127-45- 03.1252	4.963	중부	274395. 262	268493. 070	2019.07. 04.	맨홀식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174086. 90	268419. 27				지역
지적 도근점	38	하동읍 읍내리 122-3	35-04- 15.3861	127-45- 11.6116	5.213	중부	275224. 604	268701. 853	2019.07. 04.	맨홀식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174916. 35	268627. 71				지역
지적 도근점	39	하동읍 읍내리 117-1	35-04- 17.4063	127-45- 10.6553	6.788	중부	275286. 678	268677. 154	2019.07. 04.	기타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174978. 42	268602. 91				지역
지적 도근점	40	하동읍 읍내리 209-2 2	35-04- 08.0520	127-45- 02.0827	4.790	중부	274996. 759	268462. 124	2019.07. 04.	맨홀식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174688. 36	268387. 93				지역
지적 도근점	41	하동읍 읍내리 208-2 9	35-04- 10.9946	127-45- 04.7717	5.305	중부	275087. 960	268529. 572	2019.07. 04.	맨홀식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174779. 40	268455. 70				지역
지적 도근점	43	하동읍 비파리 644-4	35-04- 16.4460	127-45- 16.2935	5.861	중부	275258. 166	268820. 229	2019.07. 04.	맨홀식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174949. 89	268746. 00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관측 (설치) 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지적 도근점	48	하동읍 읍내리 1549	35-04-19.0399	127-45-10.4765	7.828	중부	275336.991	268672.242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028.71	268598.00				지역
지적 도근점	52	하동읍 목도리 783	35-03-17.6468	127-46-13.8553	41.441	중부	273457.237	270292.650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3148.61	270218.66				지역
지적 도근점	53	하동읍 목도리 723-1	35-03-13.2877	127-46-14.1360	37.621	중부	273322.954	270300.802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3014.29	270226.83				지역
지적 도근점	54	하동읍 읍내리 461-4	35-04-19.9457	127-44-55.3910	46.523	중부	275362.025	268289.823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053.65	268215.65				지역
지적 도근점	55	하동읍 읍내리 477-8	35-04-20.6650	127-44-53.8671	43.251	중부	275383.905	268251.045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075.56	268176.89				지역
지적 도근점	57	하동읍 읍내리 469-1	35-04-22.5409	127-44-46.3103	32.641	중부	275440.279	268059.153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131.94	267985.01				지역
지적 도근점	71	하동읍 읍내리 1146-1	35-04-24.2452	127-44-30.0248	7.778	중부	275489.725	267646.152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181.42	267571.79				지역
지적 도근점	72	하동읍 읍내리 972-3	35-04-22.3616	127-44-32.4162	8.465	중부	275432.127	267707.172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123.81	267632.79				지역
지적 도근점	73	하동읍 읍내리 1128-1	35-04-21.8443	127-44-33.7871	8.742	중부	275416.445	267742.024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108.15	267667.67				지역
지적 도근점	74	하동읍 읍내리 1559	35-04-20.7463	127-44-34.9481	9.400	중부	275382.826	267771.693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074.55	267697.32				지역
지적 도근점	75	하동읍 읍내리 1104-1	35-04-19.1175	127-44-38.3869	14.131	중부	275333.279	267859.193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024.99	267784.85				지역
지적 도근점	77	하동읍 읍내리 1285-5	35-04-17.7247	127-44-41.4137	10.414	중부	275290.927	267936.200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4982.56	267861.86				지역
지적 도근점	78	하동읍 읍내리 1087-1	35-04-15.2924	127-44-40.6731	8.266	중부	275215.830	267917.996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4907.51	267843.24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관측 (설치) 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지적 도근점	79	하동읍내리 1294-13	35-04-13.9633	127-44-41.3971	8.113	중부	275175.003	267936.647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4866.71	267862.31				지역
지적 도근점	81	하동읍내리 1261-6	35-04-15.1735	127-44-43.8778	6.880	중부	275212.771	267999.221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4904.48	267924.85				지역
지적 도근점	82	하동읍내리 1555	35-04-11.6924	127-44-46.1528	6.972	중부	275105.920	268057.664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4797.65	267983.35				지역
지적 도근점	115	하동읍 광평리 402-1	35-03-53.4633	127-44-42.3252	13.276	중부	274543.409	267964.882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4235.04	267890.77				지역
지적 도근점	116	하동읍 광평리 402-1	35-03-55.2462	127-44-41.5270	21.610	중부	274598.204	267944.246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4289.86	267870.12				지역
지적 도근점	117	하동읍 광평리 402-1	35-03-56.8146	127-44-43.6872	31.423	중부	274646.949	267998.620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4338.59	267924.53				지역
지적 도근점	119	하동읍내리 1381-39	35-04-00.4746	127-44-45.3118	28.243	중부	274760.049	268038.942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4451.70	267964.85				지역
지적 도근점	139	하동읍내리 157	35-03-56.1148	127-45-09.5375	3.799	중부	274630.302	268653.785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4322.04	268579.78				지역
지적 도근점	140	하동읍 비파리 741-1	35-03-46.5686	127-45-22.5133	4.463	중부	274338.595	268984.801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4030.48	268910.88				지역
지적 도근점	141	하동읍 비파리 145-9	35-03-44.1863	127-45-29.4834	4.635	중부	274266.517	269161.976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3958.40	269088.09				지역
지적 도근점	145	하동읍내리 115	35-04-20.3266	127-45-09.4677	8.863	중부	275376.449	268646.384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068.17	268572.12				지역
지적 도근점	146	하동읍내리 105-2	35-04-22.1179	127-45-09.0605	11.942	중부	275431.578	268635.651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123.30	268561.39				지역
지적 도근점	147	하동읍내리 349-80	35-04-24.0747	127-45-07.7817	21.198	중부	275491.637	268602.796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183.42	268528.57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관측 (설치) 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지적 도근점	148	하동읍 읍내리 52-1	35-04-25.7414	127-45-08.3520	27.069	중부	275543.110	268616.857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234.82	268542.57				지역
지적 도근점	149	하동읍 읍내리 48-7	35-04-28.1151	127-45-07.0420	35.167	중부	275616.013	268583.117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307.69	268508.84				지역
지적 도근점	150	하동읍 읍내리 555-1	35-04-30.8572	127-45-05.7412	43.423	중부	275700.271	268549.523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391.96	268475.20				지역
지적 도근점	151	하동읍 읍내리 563-6	35-04-33.7040	127-45-03.1957	54.048	중부	275787.517	268484.370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479.18	268410.10				지역
지적 도근점	152	하동읍 읍내리 산1	35-04-22.8232	127-45-13.8828	17.584	중부	275454.235	268757.665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146.02	268683.40				지역
지적 도근점	153	하동읍 비파리 598-1 2	35-04-21.5192	127-45-16.1964	23.970	중부	275414.494	268816.586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106.25	268742.33				지역
지적 도근점	154	하동읍 비파리 600-6	35-04-21.5637	127-45-18.7691	27.949	중부	275416.359	268881.759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107.98	268807.64				지역
지적 도근점	155	하동읍 비파리 611-8 3	35-04-21.6187	127-45-23.2880	27.346	중부	275418.920	268996.237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110.57	268921.97				지역
지적 도근점	161	하동읍 신기리 148	35-03-37.6945	127-46-12.0206	4.641	중부	274074.710	270241.386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3766.65	270167.56				지역
지적 도근점	162	하동읍 신기리 145-6	35-03-35.1137	127-46-13.1154	10.917	중부	273995.388	270269.744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3687.25	270196.08				지역
지적 도근점	164	하동읍 신기리 144-4	35-03-34.7220	127-46-06.7019	9.168	중부	273982.064	270107.316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3673.93	270033.55				지역
지적 도근점	165	하동읍 신기리 125-1	35-03-35.6941	127-46-04.6043	5.721	중부	274011.614	270053.933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3703.44	269980.16				지역
지적 도근점	169	하동읍 신기리 102-25 0	35-03-12.9810	127-46-31.1726	4.888	중부	273316.848	270732.617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3008.68	270658.56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관측 (설치) 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지적 도근점	170	하동읍 신기리 103-127	35-03-03.0885	127-46-33.9362	7.582	중부	273012.523	270805.025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2704.29	270730.97				지역
지적 도근점	647	고전면 전도리 580-9	34-59-56.7071	127-47-28.2018	14.798	중부	267279.433	272225.798	2019.07.05.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6971.88	272151.72				지역
지적 도근점	648	고전면 전도리 580-6	35-00-03.8065	127-47-24.4688	21.713	중부	267497.469	272129.404	2019.07.05.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7190.08	272055.80				지역
지적 도근점	652	고전면 신월리 1449-2	35-01-13.0641	127-47-18.8678	9.212	중부	269630.720	271970.516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9323.21	271896.53				지역
지적 도근점	653	고전면 신월리 1469	35-01-46.4151	127-47-40.9288	24.201	중부	270662.967	272521.634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0354.76	272447.30				지역
지적 도근점	654	고전면 신월리 382-1	35-01-43.0598	127-47-33.6175	12.512	중부	270558.090	272337.115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0249.97	272262.74				지역
지적 도근점	655	고전면 신월리 산146	35-01-46.6731	127-48-09.2573	110.210	중부	270676.664	273239.684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0368.51	273165.35				지역
지적 도근점	662	고전면 범아리 산 153-5	35-01-33.4482	127-48-22.5433	95.185	중부	270271.813	273579.770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9963.61	273505.41				지역
지적 도근점	663	고전면 범아리 산 155-2	35-01-33.8812	127-48-29.5883	79.924	중부	270286.602	273758.256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9978.43	273683.87				지역
지적 도근점	664	고전면 범아리 산 157-3	35-01-34.4397	127-48-33.9603	65.712	중부	270304.711	273868.950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9996.47	273794.68				지역
지적 도근점	665	고전면 범아리 533-1	35-01-31.2110	127-48-38.5419	56.643	중부	270206.151	273985.906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9897.89	273911.62				지역
지적 도근점	666	고전면 고하리 1024	35-01-33.5942	127-50-17.0643	13.716	중부	270300.223	276482.921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9992.25	276408.94				지역
지적 도근점	667	고전면 고하리 359	35-01-42.9170	127-50-18.6190	19.817	중부	270587.867	276519.920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0279.83	276445.89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관측 (설치) 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지적 도근점	668	고전면 고하리 80-7	35-01-48.6163	127-50-17.3616	25.292	중부	270763.241	276486.571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0455.12	276412.49				지역
지적 도근점	670	고전면 고하리 374-4	35-01-56.1898	127-50-15.0511	30.299	중부	270996.150	276426.041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0687.93	276351.94				지역
지적 도근점	671	고전면 고하리 370-3	35-01-59.8735	127-50-15.9733	32.121	중부	271109.871	276448.464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0801.62	276374.35				지역
지적 도근점	672	고전면 고하리 산 134-3	35-01-16.6757	127-49-48.7860	12.007	중부	269772.837	275770.382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9464.64	275695.99				지역
지적 도근점	676	고전면 대덕리 324-15	35-00-45.2150	127-48-46.0315	25.687	중부	268790.191	274187.312	2019.07.0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8482.09	274112.26				지역
지적 도근점	679	고전면 범아리 216-4	35-01-09.1224	127-49-04.9902	15.188	중부	269530.894	274661.972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9222.86	274587.61				지역
지적 도근점	680	고전면 범아리 222	35-01-16.0815	127-49-04.7465	16.543	중부	269745.310	274654.034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9437.21	274579.65				지역
지적 도근점	681	고전면 명교리 493-2	35-01-41.5497	127-50-44.7388	17.786	중부	270551.313	277182.412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0243.23	277108.07				지역
지적 도근점	682	고전면 명교리 509-3	35-01-37.1377	127-50-40.5155	16.652	중부	270414.439	277076.503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0106.35	277002.15				지역
지적 도근점	683	고전면 고하리 산 2-2	35-01-20.1309	127-50-33.1870	16.452	중부	269888.752	276895.144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9580.62	276820.72				지역
지적 도근점	684	고전면 고하리 147-2	35-01-17.6688	127-50-27.6319	11.276	중부	269811.688	276754.952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9503.53	276680.52				지역
지적 도근점	685	고전면 명교리 619	35-01-52.6275	127-51-08.6561	21.203	중부	270897.868	277785.802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0589.59	277711.56				지역
지적 도근점	686	고전면 명교리 182-7	35-01-52.5251	127-51-02.3360	22.062	중부	270893.345	277625.620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0585.14	277551.39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관측 (설치) 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지적 도근점	687	고전면 신월리 1434	35-01-21.2904	127-47-12.3711	7.296	중부	269882.939	271803.812	2019.07.04.	기타	하동청 민원과	세계
							169575.36	271729.72				지역
지적 도근점	688	고전면 신월리 1340-2	35-01-33.3342	127-46-58.4848	9.539	중부	270251.336	271448.859	2019.07.04.	기타	하동청 민원과	세계
							169943.48	271374.98				지역
지적 도근점	689	고전면 대덕리 432-1	35-00-37.5363	127-48-52.6203	7.616	중부	268554.912	274356.301	2019.07.05.	맨홀식	하동청 민원과	세계
							168247.04	274281.53				지역
지적 도근점	691	고전면 고하리 153-4	35-01-24.2368	127-50-05.7028	9.084	중부	270009.432	276197.310	2019.07.04.	맨홀식	하동청 민원과	세계
							169701.27	276122.90				지역
지적 도근점	692	고전면 성천리 산 115	35-01-54.0908	127-49-03.8024	26.217	중부	270916.484	274620.504	2019.07.04.	철재	하동청 민원과	세계
							170608.23	274546.25				지역
지적 도근점	693	고전면 성천리 1222	35-02-01.2007	127-49-03.7588	22.259	중부	271135.589	274617.603	2019.07.04.	철재	하동청 민원과	세계
							170827.31	274543.35				지역
지적 도근점	695	고전면 성천리 1139-1	35-02-10.5656	127-48-59.0409	30.318	중부	271423.218	274495.652	2019.07.04.	맨홀식	하동청 민원과	세계
							171114.95	274421.40				지역
지적 도근점	697	고전면 성천리 1079-3	35-02-17.9194	127-48-59.4133	36.898	중부	271649.925	274503.238	2019.07.04.	철재	하동청 민원과	세계
							171341.83	274429.08				지역
지적 도근점	699	고전면 성천리 640	35-02-14.2346	127-49-02.530	27.925	중부	271537.014	274583.165	2019.07.04.	기타	하동청 민원과	세계
							171228.96	274509.01				지역
지적 도근점	700	고전면 성천리 641	35-02-07.6823	127-49-08.8587	26.104	중부	271336.401	274745.238	2019.07.04.	철재	하동청 민원과	세계
							171028.30	274671.05				지역
지적 도근점	701	고전면 성천리 672	35-02-04.7466	127-49-14.3209	34.558	중부	271247.065	274884.437	2019.07.04.	철재	하동청 민원과	세계
							170939.11	274810.26				지역
지적 도근점	703	고전면 성천리 산75-1	35-02-18.9808	127-49-26.8982	74.052	중부	271688.364	275199.624	2019.07.04.	기타	하동청 민원과	세계
							171380.21	275125.42				지역
지적 도근점	704	고전면 성천리 1201-2	35-02-25.0781	127-49-29.0518	77.304	중부	271876.723	275252.658	2019.07.04.	철재	하동청 민원과	세계
							171568.52	275178.60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관측 (설치) 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지적 도근점	715	고전면 성천리 737-4	35-02-32.5295	127-49-00.6299	41.713	중부	272100.436	274530.388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1792.02	274456.34				지역
지적 도근점	716	고전면 성천리 1066-2	35-02-20.1663	127-49-01.9420	38.915	중부	271719.695	274566.765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1411.38	274492.55				지역
지적 도근점	718	고전면 고하리 165-2	35-01-27.4415	127-50-14.6398	11.358	중부	270110.094	276423.049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9802.17	276349.11				지역
지적 도근점	719	고전면 고하리 162-3	35-01-29.7310	127-50-16.3803	11.803	중부	270181.023	276466.580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9873.09	276392.63				지역
지적 도근점	720	고전면 성천리 1218	35-02-20.8540	127-48-44.8561	64.560	중부	271737.353	274133.521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1429.19	274059.35				지역
지적 도근점	721	고전면 고하리 436-2	35-02-03.7150	127-50-16.6768	40.775	중부	271228.409	276465.303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0920.10	276391.16				지역
지적 도근점	722	고전면 고하리 1020	35-02-11.4627	127-50-22.3491	62.254	중부	271468.386	276607.077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1160.12	276533.00				지역
지적 도근점	723	고전면 신월리 1136-2	35-02-20.4154	127-47-19.5249	8.034	중부	271706.484	271970.773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1398.38	271896.93				지역
지적 도근점	726	고전면 신월리 597	35-02-23.0909	127-47-27.6312	27.740	중부	271790.563	272175.585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1482.34	272101.39				지역
지적 도근점	727	고전면 신월리 482-5	35-02-08.1641	127-47-27.7990	7.654	중부	271330.583	272183.484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1022.34	272109.23				지역
지적 도근점	729	고전면 신월리 1177-2	35-02-15.5711	127-47-23.5523	7.577	중부	271558.001	272074.034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1249.78	271999.81				지역
지적 도근점	732	고전면 신월리 551-2	35-02-18.3711	127-47-29.1170	24.557	중부	271645.409	272214.400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1337.17	272140.16				지역
지적 도근점	734	고전면 신월리 979-1	35-02-42.9712	127-47-14.8955	8.446	중부	272400.683	271847.946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2092.48	271773.73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관측 (설치) 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지적 도근점	735	고전면 신월리 1466	35-02-33.9402	127-47-18.9110	7.780	중부	272123.168	271951.917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1814.96	271877.71				지역
지적 도근점	736	고전면 신월리 1063-1	35-02-28.0990	127-47-17.0927	7.991	중부	271942.792	271907.255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1634.57	271833.04				지역
지적 도근점	740	고전면 고하리 149-2	35-01-18.5825	127-50-22.9859	10.320	중부	269838.854	276636.929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9530.68	276562.52				지역
지적 도근점	741	고전면 고하리 132-3	35-01-20.5180	127-50-25.3976	17.537	중부	269899.017	276697.568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9590.87	276623.15				지역
지적 도근점	742	고전면 고하리 150-2	35-01-19.5258	127-50-20.1258	9.741	중부	269867.314	276564.175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9559.15	276489.73				지역
지적 도근점	743	고전면 성평리 411	35-01-20.7940	127-50-15.1083	8.932	중부	269905.331	276436.643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9597.14	276362.21				지역
지적 도근점	744	고전면 전도리 316-3	35-00-01.0809	127-47-57.3036	5.863	중부	267420.099	272962.710	2019.07.05.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7112.16	272888.44				지역
지적 도근점	745	고전면 전도리 410-5	34-59-59.8393	127-47-49.3391	6.173	중부	267380.221	272761.048	2019.07.05.	표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7072.30	272686.76				지역
지적 도근점	748	고전면 범아리 420	35-01-27.8732	127-49-11.0771	13.936	중부	270110.023	274811.546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9801.78	274737.15				지역
지적 도근점	750	고전면 범아리 331-3	35-01-35.350	127-49-04.2399	17.748	중부	270339.020	274636.326	2019.07.04.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0030.83	274561.91				지역
지적 도근점	751	고전면 범아리 산 185-10	35-01-39.3522	127-49-03.9314	19.350	중부	270462.296	274627.495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0154.13	274553.08				지역
지적 도근점	752	고전면 범아리 산 185-9	35-01-44.5997	127-49-03.8681	19.954	중부	270624.002	274624.567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0315.78	274550.17				지역
지적 도근점	753	고전면 범아리 산 192-1	35-01-50.2937	127-49-03.9226	24.455	중부	270799.491	274624.510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0491.29	274550.13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관측 (설치) 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지적 도근점	764	고전면 고하리 1030	35-01-15.9764	127-49-54.6145	10.814	중부	269752.517	275918.326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9444.31	275843.95				지역
지적 도근점	1580	금성면 갈사리 910	34-56-46.2980	127-47-12.7267	12.373	중부	261408.365	271879.560	2019.07.0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1100.35	271805.16				지역
지적 도근점	1581	금성면 갈사리 226-1	34-56-49.2065	127-47-10.5234	15.032	중부	261497.557	271822.945	2019.07.0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1189.57	271748.55				지역
지적 도근점	1582	금성면 갈사리 333-5	34-56-52.2027	127-47-05.3806	14.791	중부	261588.865	271691.725	2019.07.0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1280.89	271617.32				지역
지적 도근점	1583	금성면 갈사리 910	34-56-52.3268	127-47-02.7354	15.637	중부	261592.164	271624.572	2019.07.0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1284.18	271550.17				지역
지적 도근점	1585	금성면 갈사리 786-4	34-56-56.5782	127-46-57.6269	24.323	중부	261722.166	271493.920	2019.07.0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1414.18	271419.55				지역
지적 도근점	1586	금성면 갈사리 798-8	34-57-01.3732	127-46-51.2225	17.074	중부	261868.668	271330.258	2019.07.0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1560.68	271255.90				지역
지적 도근점	1592	금성면 고포리 543-1	34-57-39.8003	127-46-56.7468	-0.249	중부	263053.993	271461.167	2019.07.05.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2745.93	271386.86				지역
지적 도근점	1594	금성면 갈사리 543	34-57-34.4548	127-46-53.0748	15.050	중부	262888.530	271369.294	2019.07.0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2580.68	271294.74				지역
지적 도근점	1608	금성면 공항리 994	34-58-30.9472	127-47-42.5383	1.374	중부	264639.388	272610.389	2019.07.0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4331.87	272536.10				지역
지적 도근점	1641	금성면 고포리 437-9 8	34-58-09.9925	127-46-15.9546	2.322	중부	263976.406	270419.065	2019.07.0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3668.21	270344.85				지역
지적 도근점	1644	금성면 고포리 357-2	34-58-13.3762	127-46-29.7506	1.187	중부	264083.389	270768.236	2019.07.0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3775.11	270694.01				지역
지적 도근점	1649	금성면 고포리 405	34-58-11.9299	127-46-36.3770	1.773	중부	264040.123	270936.679	2019.07.0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3731.85	270862.47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관측 (설치) 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지적 도근점	1650	금성면 고포리 439-3	34-58-05.8124	127-46-34.710	1.020	중부	263851.266	270895.853	2019.07.05.	기타	하동청민원과	세계
							163542.97	270821.66				지역
지적 도근점	1651	금성면 고포리 564	34-58-03.8457	127-46-29.6579	1.683	중부	263789.662	270768.160	2019.07.05.	기타	하동청민원과	세계
							163481.39	270693.92				지역
지적 도근점	1652	금성면 고포리 543-130	34-57-56.5866	127-46-32.1618	-0.137	중부	263566.447	270833.415	2019.07.05.	철재	하동청민원과	세계
							163258.20	270759.21				지역
지적 도근점	1653	금성면 고포리 543-78	34-57-57.4203	127-46-35.0265	3.689	중부	263592.705	270905.891	2019.07.05.	기타	하동청민원과	세계
							163284.47	270831.68				지역
지적 도근점	1658	금성면 갈사리 1202	34-57-50.5966	127-46-34.9653	0.097	중부	263382.403	270905.972	2019.07.05.	철재	하동청민원과	세계
							163074.17	270831.77				지역
지적 도근점	1659	금성면 갈사리 1205	34-57-45.9150	127-46-39.1319	0.714	중부	263238.947	271012.800	2019.07.05.	철재	하동청민원과	세계
							162930.73	270938.59				지역
지적 도근점	1660	금성면 갈사리 1205	34-57-40.7614	127-46-35.8112	1.079	중부	263079.472	270929.786	2019.07.05.	기타	하동청민원과	세계
							162771.25	270855.55				지역
지적 도근점	1661	금성면 갈사리 1205	34-57-36.9738	127-46-36.1913	0.771	중부	262962.822	270940.337	2019.07.05.	기타	하동청민원과	세계
							162654.60	270866.13				지역
지적 도근점	1740	금성면 고포리 437-68	34-58-06.9714	127-46-20.8073	2.188	중부	263884.253	270542.888	2019.07.05.	기타	하동청민원과	세계
							163576.03	270468.64				지역
지적 도근점	1743	금성면 고포리 347-1	34-58-17.5623	127-46-31.2998	3.331	중부	264212.699	270806.535	2019.07.05.	기타	하동청민원과	세계
							163904.43	270732.28				지역
지적 도근점	1745	금성면 고포리 526	34-58-17.1901	127-46-40.7217	1.418	중부	264203.085	271045.633	2019.07.05.	기타	하동청민원과	세계
							163894.80	270971.40				지역
지적 도근점	1746	금성면 고포리 416-1	34-58-13.9552	127-46-39.1981	2.897	중부	264103.094	271007.756	2019.07.05.	철재	하동청민원과	세계
							163794.79	270933.55				지역
지적 도근점	1752	금성면 고포리 501	34-58-00.3221	127-46-38.5119	5.660	중부	263682.817	270993.618	2019.07.05.	기타	하동청민원과	세계
							163374.59	270919.39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관측 (설치) 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지적 도근점	1753	금성면 고포리 491	34-58-01.6987	127-46-40.2929	11.863	중부	263725.592	271038.470	2019.07.05.	기타	하동청민원과	세계
							163417.35	270964.25				지역
지적 도근점	1754	금성면 고포리 496	34-57-59.6117	127-46-39.6350	5.893	중부	263661.148	271022.279	2019.07.05.	철재	하동청민원과	세계
							163352.91	270948.05				지역
지적 도근점	1755	금성면 갈사리 1202	34-57-53.0430	127-46-32.3992	0.323	중부	263457.288	270840.287	2019.07.05.	기타	하동청민원과	세계
							163149.07	270766.05				지역
지적 도근점	1859	고전면 명교리 630-1	35-02-15.5132	127-50-53.0668	21.220	중부	271599.799	277384.633	2019.07.04.	기타	하동청민원과	세계
							171291.60	277310.31				지역
지적 도근점	1925	고전면 전도리 산 39-10	34-59-47.7936	127-48-07.3603	4.552	중부	267012.657	273221.022	2019.07.05.	맨홀식	하동청민원과	세계
							166705.26	273147.38				지역
지적 도근점	1945	하동읍 읍내리 349-25	35-04-20.4788	127-44-59.1212	48.515	중부	275379.164	268384.209	2019.07.04.	맨홀식	하동청민원과	세계
							175070.68	268310.40				지역
지적 도근점	1946	하동읍 읍내리 401-5	35-04-19.6156	127-44-57.6905	40.697	중부	275352.292	268348.160	2019.07.04.	철재	하동청민원과	세계
							175043.94	268273.99				지역
지적 도근점	1947	하동읍 읍내리 398-4	35-04-18.5223	127-44-56.9487	30.527	중부	275318.456	268329.618	2019.07.04.	철재	하동청민원과	세계
							175010.14	268255.46				지역
지적 도근점	1948	하동읍 읍내리 392-4	35-04-17.2204	127-44-57.2325	22.426	중부	275278.389	268337.110	2019.07.04.	철재	하동청민원과	세계
							174970.07	268262.94				지역
지적 도근점	2086	금성면 갈사리 195-3	34-56-39.0221	127-47-10.8013	9.719	중부	261183.752	271832.466	2019.07.05.	철재	하동청민원과	세계
							160875.71	271757.98				지역
지적 도근점	2089	금성면 갈사리 910	34-56-57.5681	127-46-55.3849	24.173	중부	261752.229	271436.792	2019.07.05.	맨홀식	하동청민원과	세계
							161444.15	271362.69				지역
지적 도근점	2090	금성면 갈사리 산 59-5	34-57-05.4918	127-46-50.6453	6.220	중부	261995.479	271314.624	2019.07.05.	기타	하동청민원과	세계
							161687.35	271240.47				지역
지적 도근점	2091	금성면 갈사리 910	34-57-07.3495	127-46-52.5507	2.727	중부	262053.106	271362.523	2019.07.05.	철재	하동청민원과	세계
							161744.96	271288.34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관측 (설치) 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지적 도근점	2092	금성면 갈사리 910	34-57-10.3342	127-46-52.9157	2.089	중부	262145.158	271371.064	2019.07.0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1837.03	271296.87				지역
지적 도근점	2093	금성면 갈사리 750-29	34-57-12.6376	127-46-57.2219	0.828	중부	262217.000	271479.771	2019.07.0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1908.89	271405.54				지역
지적 도근점	2095	금성면 갈사리 913	34-57-20.0213	127-46-57.2973	4.709	중부	262444.560	271479.902	2019.07.0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2136.46	271405.62				지역
지적 도근점	2096	금성면 갈사리 924-87	34-57-22.2499	127-46-55.1990	0.662	중부	262512.824	271426.128	2019.07.0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2204.68	271351.83				지역
지적 도근점	2153	고전면 전도리 332-2	34-59-47.7295	127-47-43.6435	0.880	중부	267005.870	272619.586	2019.07.0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6697.89	272545.35				지역
지적 도근점	2155	고전면 전도리 359-2	34-59-43.1133	127-47-59.4591	0.851	중부	266866.814	273021.804	2019.07.0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6558.91	272947.58				지역
지적 도근점	2158	고전면 전도리 252-4	34-59-49.8969	127-48-10.4515	3.459	중부	267078.106	273298.892	2019.07.0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6770.21	273224.65				지역
지적 도근점	2159	고전면 전도리 1293-4	34-59-51.5869	127-48-14.3460	3.144	중부	267130.982	273397.236	2019.07.05.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6823.20	273322.92				지역
지적 도근점	2161	고전면 전도리 250-11	34-59-57.9760	127-48-24.6632	4.555	중부	267329.990	273657.284	2019.07.0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7022.55	273582.69				지역
지적 도근점	2162	고전면 전도리 1292-3	35-00-00.6893	127-48-29.5867	4.768	중부	267414.616	273781.462	2019.07.0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7107.42	273706.73				지역
지적 도근점	2163	고전면 대덕리 516-1	35-00-01.8863	127-48-32.7230	5.201	중부	267452.149	273860.695	2019.07.0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7144.70	273787.15				지역
지적 도근점	2164	고전면 대덕리 518	35-00-04.3971	127-48-35.7574	4.873	중부	267530.151	273937.015	2019.07.0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7223.19	273862.09				지역
지적 도근점	2165	고전면 대덕리 719	35-00-06.3314	127-48-38.4318	4.940	중부	267590.314	274004.351	2019.07.05.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7282.54	273929.95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관측 (설치) 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지적 도근점	2326	고전면 전도리 944-2	35-00-05.8269	127-47-21.7604	25.695	중부	267559.191	272060.230	2019.07.0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7251.84	271986.57				지역
지적 도근점	2349	하동읍 목도리 산 36	35-02-52.0212	127-46-12.7334	21.097	중부	272667.287	270270.318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2358.83	270196.27				지역
지적 도근점	2350	하동읍 목도리 산 34-2	35-02-43.2844	127-46-13.9429	18.019	중부	272398.274	270303.050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2089.80	270229.06				지역
지적 도근점	2354	하동읍 목도리 100-3 2	35-02-20.9353	127-46-43.8096	10.970	중부	271715.397	271065.385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1407.00	270991.26				지역
지적 도근점	2355	하동읍 목도리 314-2 5	35-02-15.9241	127-46-33.4635	10.634	중부	271558.917	270804.350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1250.56	270730.22				지역
지적 도근점	2357	하동읍 목도리 83-6	35-02-06.0810	127-46-28.8414	8.405	중부	271254.664	270689.547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0946.37	270615.39				지역
지적 도근점	2428	하동읍 비파리 181-5	35-03-42.9597	127-45-37.4162	8.775	중부	274230.247	269363.275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3921.95	269289.26				지역
지적 도근점	2430	하동읍 비파리 829	35-03-40.6273	127-45-24.3079	4.352	중부	274155.841	269031.664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3847.54	268957.63				지역
지적 도근점	2431	하동읍 비파리 852-1 0	35-03-33.0615	127-45-22.7814	10.102	중부	273922.383	268994.752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3614.09	268920.73				지역
지적 도근점	2436	고전면 신월리 888-7	35-02-55.3711	127-47-14.3864	8.606	중부	272782.723	271832.029	2019.07.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2474.37	271758.07				지역
지적 도근점	2438	금성면 갈사리 1216	34-57-26.6912	127-47-10.8682	-0.228	중부	262652.814	271822.614	2019.07.0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2344.76	271748.51				지역
지적 도근점	2440	금성면 갈사리 1207-5	34-57-22.1485	127-47-25.1137	-0.294	중부	262515.667	272185.153	2019.07.0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2207.55	272110.98				지역
지적 도근점	2441	금성면 갈사리 1207-6	34-57-15.6568	127-47-27.7086	0.300	중부	262316.130	272252.574	2019.07.0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2008.00	272178.37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관측 (설치) 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지적 도근점	2442	금성면 갈사리 1207	34-57-09.1461	127-47-31.9006	-0.094	중부	262116.328	272360.525	2019.07.05.	철재	하동청민원과	세계
							161808.24	272286.34				지역
지적 도근점	2443	금성면 갈사리 1227-11	34-57-01.8892	127-47-32.0444	-0.582	중부	261892.715	272365.946	2019.07.05.	철재	하동청민원과	세계
							161584.69	272291.70				지역
지적 도근점	2444	금성면 갈사리 1227-10	34-56-54.0650	127-47-28.2023	-0.390	중부	261650.822	272270.363	2019.07.05.	철재	하동청민원과	세계
							161342.84	272196.06				지역
지적 도근점	2445	금성면 갈사리 1227-9	34-56-46.9821	127-47-29.0620	-0.582	중부	261432.717	272293.905	2019.07.05.	철재	하동청민원과	세계
							161124.77	272219.57				지역
지적 도근점	2447	금성면 갈사리 1207-6	34-56-34.3015	127-47-29.3683	-0.226	중부	261041.993	272304.770	2019.07.05.	철재	하동청민원과	세계
							160734.10	272230.28				지역
지적 도근점	2641	금성면 갈사리 924-98	34-57-39.6227	127-46-46.7063	2.394	중부	263046.530	271206.476	2019.07.05.	기타	하동청민원과	세계
							162738.33	271132.34				지역
지적 도근점	2642	금성면 고포리 571-1	34-57-46.8373	127-46-53.1818	1.209	중부	263270.150	271369.026	2019.07.05.	기타	하동청민원과	세계
							162961.98	271294.84				지역
지적 도근점	2643	금성면 고포리 42-2	34-57-52.3164	127-46-56.9664	2.276	중부	263439.753	271463.719	2019.07.05.	기타	하동청민원과	세계
							163131.57	271389.50				지역
지적 도근점	2644	금성면 고포리 1-105	34-57-59.5080	127-47-05.2299	2.195	중부	263663.026	271671.622	2019.07.05.	기타	하동청민원과	세계
							163354.85	271597.37				지역
지적 도근점	2645	금성면 공항리 614-33	34-58-02.2025	127-47-08.8189	1.590	중부	263746.777	271762.017	2019.07.05.	기타	하동청민원과	세계
							163438.61	271687.79				지역
지적 도근점	2646	금성면 공항리 647	34-58-08.1056	127-47-16.4217	10.625	중부	263930.215	271953.456	2019.07.05.	기타	하동청민원과	세계
							163622.02	271879.22				지역
지적 도근점	2647	금성면 공항리 499	34-58-12.6164	127-47-20.2007	10.283	중부	264069.985	272048.225	2019.07.05.	기타	하동청민원과	세계
							163761.83	271973.99				지역
지적 도근점	2648	금성면 공항리 452-3	34-58-17.0338	127-47-22.5586	5.015	중부	264206.590	272106.965	2019.07.05.	기타	하동청민원과	세계
							163898.44	272032.74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관측 (설치) 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지적 도근점	2650	금성면 궁항리 398	34-58-33.4809	127-47-30.6998	12.265	중부	264715.087	272309.471	2019.07.0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4406.92	272235.22				지역
지적 도근점	2651	금성면 궁항리 산 78-10	34-58-36.6875	127-47-33.3610	12.811	중부	264814.443	272376.193	2019.07.0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4506.30	272301.90				지역
지적 도근점	2653	금성면 궁항리 350-1	34-58-45.5812	127-47-42.9002	5.360	중부	265090.449	272615.980	2019.07.0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4782.30	272541.68				지역
지적 도근점	2654	금성면 궁항리 산 18-27	34-58-49.4195	127-47-46.3616	11.261	중부	265209.436	272702.837	2019.07.0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4901.28	272628.57				지역
지적 도근점	2655	금성면 궁항리 산 18-27	34-58-53.5313	127-47-48.7565	16.728	중부	265336.636	272762.573	2019.07.0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5028.47	272688.35				지역
지적 도근점	2656	금성면 궁항리 116-2	34-58-58.4219	127-47-49.4036	16.241	중부	265487.484	272777.783	2019.07.0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5179.24	272703.49				지역
지적 도근점	2702	고전면 성평리 산 40-1	35-00-44.1884	127-50-46.5995	120.788	중부	268783.948	277244.565	2019.07.0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8475.85	277170.26				지역
지적 도근점	2703	고전면 성평리 산 10-2	35-00-52.1445	127-50-56.1769	136.722	중부	269031.201	277485.316	2019.07.0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8723.12	277411.03				지역
지적 도근점	2704	고전면 성평리 산 10-2	35-00-54.8296	127-51-03.8193	144.938	중부	269115.600	277678.378	2019.07.0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8807.48	277604.11				지역
지적 도근점	2705	고전면 성평리 산 10-2	35-01-03.010	127-51-18.5271	144.830	중부	269370.891	278049.123	2019.07.0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9062.74	277974.87				지역
지적 도근점	2848	하동읍 읍내리 1549	35-04-26.8589	127-44-47.6276	57.648	중부	275573.604	268091.532	2019.07.04.	표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265.20	268017.38				지역
지적 도근점	2849	하동읍 읍내리 1185-2	35-04-23.9131	127-44-44.2918	40.077	중부	275482.185	268007.696	2019.07.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5173.81	267933.56				지역
지적 도근점	2851	금성면 궁항리 971	34-58-34.2707	127-47-42.6884	1.519	중부	264741.841	272613.383	2019.07.0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4433.70	272539.14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관측 (설치) 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지적 도근점	2852	금성면 공항리 979	34-58- 30.8038	127-47- 48.3621	1.292	중부	264636. 146	272758. 153	2019.07. 05.	철재	하동청 민원과	세계
							164328. 03	272683. 88				지역
지적 도근점	2853	금성면 공항리 979	34-58- 24.4002	127-47- 49.1185	0.578	중부	264438. 955	272778. 913	2019.07. 05.	철재	하동청 민원과	세계
							164130. 79	272704. 64				지역
지적 도근점	2854	금성면 공항리 1033	34-58- 18.3029	127-47- 49.9190	0.508	중부	264251. 210	272800. 718	2019.07. 05.	철재	하동청 민원과	세계
							163943. 06	272726. 45				지역
지적 도근점	2855	금성면 가덕리 905	34-58- 15.1302	127-47- 53.7646	-0.128	중부	264154. 216	272899. 053	2019.07. 05.	철재	하동청 민원과	세계
							163846. 06	272824. 77				지역
지적 도근점	3055	금성면 갈사리 222-8	34-56- 48.6836	127-47- 02.1787	3.195	중부	261479. 7800	271611. 3260	2019.07. 05.	철재	하동청 민원과	세계
							161171. 820	271537. 020				지역

하동군 고시 제2019 - 181호

## 대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대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일

### 하 동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대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 사업의 목적

- 금남면 대도리 대도마을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조사·분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여, 쾌적함을 동시에 증진하고 대도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향상과 정주공간 조성,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사 업 비 : 금969백만원(국비 480, 도비 62, 군비 427)

4.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회관 리모델링, 무선방송설비
- 지역경관개선 : 부잔교 정비, 야간산책로 조성, 수국길·야생초화원 조성
- 지역역량강화 : 홍보마케팅활성화, 전문가양성, 리더 및 주민교육

5.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18년 ~ 2020년(3년간)

※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55-880-2517)

하동군 고시 2019-182호

#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18, 902호		
성명(법인명)	리온픽처스		
하 천 명 칭	섬진강	하천등급	국가하천
점 용 장 소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1219		
점 용 면 적	31,662㎡		
최 초 허 가 일	2019년 10월 11일		
점 용 기 간	2019. 10. 28.(1일간)		

「하천법」 제33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하 동 군 수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연장 허가 공고

하동군 공고 제2019-183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김광*	주소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 89-2
소하천명		소하천(대덕천)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치	고전면 범아리 137-8(제) *인접:고전면 범아리 139(답)		
	면적	296㎡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기간	2019.5.10.~2023.5.10.		
	목적 및 사유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부지 구성에 따른 하천점용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허 가 조 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9 - 185호

## 원목계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원목계 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일

### 하 동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원목계 마을 만들기 사업

2. 사업의 목적

- 청암면 목계리 원목마을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조사·분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여, 쾌적함을 동시에 증진하고 원목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향상과 정주공간 조성,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사 업 비 : 금1,000백만원(국비 92, 도비 12, 군비 896)

4.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별빛힐링문화센터 신축, 마을회관 리모델링
- 지역경관개선 : 힐링산책로 조성, 힐링쉼터 조성
- 지역역량강화 :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5.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1년(3년간)

※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55-880-2517)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조서

□ 사업명 : 원목마을 만들기 사업

세부 사업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별빛힐링문화센터	청암면 관리	1008	임	1,125	1,125	하동군		
힐링쉼터조성	청암면 관리	489-1	답	643	8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청암면 관리	489	답	1,767	131	박○동	하동군 목계리 ○○	
	청암면 관리	866-1	답	168	1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하동군 고시 제2019 - 186호

### 개 간 사 업 시 행 계 획 승 인 서

사 업 시 행 자	성 명	오갑*	생년월일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70번길9			
개 간 장 소	시·군	읍·면	리·동		
	하동	화개	삼신		
개 간 의 용 도	전작재배				
승 인 면 적	지 번	지 목	지 적	※ 토지	
	산350-11	임	61㎡	대가	
지 정 착 수 시 기	2019. 10. ~ 2020. 5.				
공 사 비 예 정 액	5,800천원				
승 인 조 건	제18항을 부함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함.

2019년 10월 14일

하 동 군 수

비 고 : ※는 소유자 개발시에는 기재 불요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토지표시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개간승인 면적	토 지 대 가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m <sup>2</sup> 당	금액	주 소	성명	
하동	화개	삼신	산350-11	임야	61m <sup>2</sup>	61m <sup>2</sup>			경남 창원 시 의창구 의안로70 번길 9 , 201호	오갑석	

1. 개간사업 시행승인서에는 계획평면도를 첨부함.
2. 승인을 받은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 당하였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즉시 승인서를 반납할 것.

하동군 고시 제2019 - 188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15.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공설운동장로 548-2 외 3필지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0.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 동 사 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483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공설운동 장로 548-2	2019 1015		2007 0618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 는 도로로 공공시설명 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병천리 429-17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덕천로 102-88	2019 1015		2007 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 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 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병천리 852-1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병천길 103	2019 1015		2008 0402	뒷산이 병풍처럼 싸여져 있고 앞 냇물이 휘어 들어 붙여진 자연마을이 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9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이곡길 14	2019 1015		2007 0618	이곡이라는 자연마을이 름 반영	

하동군 공고 제2019-1101호

## 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제안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를 규정(안 제3조)
  - 나.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동의의 철회를 규정(안 제4조)
  - 다. 상인회 등록 취소를 규정(안 제5조)
  - 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를 규정(안 제6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하동군(참조 : 경제전략과, 전화 880-2193, FAX 880-2199, bogus94@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단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3.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 공고 및 시장이용객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동의를 철회) 전통시장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시



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상인회 등록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개정)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4조제1항 중 “시장 점포나 장옥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에 따라 시장 점포나 장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고, 제4조제3항제2호 중 “5년의 범위내에서”를 “5년의”로 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개정에 따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4조제3항제2호의 시장 사용허가 갱신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장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1

현행 조례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 ( 제정 ) 1963.01.09 조례 제 25호
- ( 일부개정 ) 1963.07.13 조례 제 34호
- ( 일부개정 ) 1966.07.01 조례 제 106호
- ( 일부개정 ) 1970.12.31 조례 제 172호
- ( 일부개정 ) 1974.02.18 조례 제 270호
- ( 일부개정 ) 1977.01.31 조례 제 371호
- ( 일부개정 ) 1977.03.25 조례 제 410호
- ( 일부개정 ) 1979.07.19 조례 제 503호
- ( 일부개정 ) 1982.06.01 조례 제 645호
- ( 일부개정 ) 1985.06.28 조례 제 892호
- ( 일부개정 ) 1989.08.14 조례 제1115호
- ( 일부개정 ) 1990.10.11 조례 제1199호
- ( 일부개정 ) 2013.04.10 조례 제2001호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 전문개정 ) 2013.08.16 조례 제2016호
- ( 일부개정 ) 2015.09.25 조례 제2081호
- ( 일부개정 ) 2017.12.08 조례 제2253호
- ( 일부개정 ) 2018.05.18 조례 제2275호
- ( 일부개정 ) 2018.11.16 조례 제2305호

( 일부개정 ) 2013.04.10 조례 제2001호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전문개정 ) 2013.08.16 조례 제2016호  
 ( 일부개정 ) 2015.09.25 조례 제2081호  
 ( 일부개정 ) 2017.12.08 조례 제2253호  
 ( 일부개정 ) 2018.05.18 조례 제2275호  
 ( 일부개정 ) 2018.11.16 조례 제230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장날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점포"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4. "노점"이란 시장부지 및 인접 도로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 장옥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시장 내 점포, 장옥, 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 2 장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 점포나 장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기간 연장이나 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점사용에 관하여는 구술신고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 결정은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군의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나 장옥의 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5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사용을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및 제1-1호서식에 의한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 1. 제2항 단서에 의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2.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점포 및 장옥 사용자에게 대하여도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 ④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시장 사용권은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증을 허가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⑥ 군수는 사용자의 일치여부 등 제4항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상 상의 항목들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6.>

제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 사용을 허가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시장사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
- 2. 상속으로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았을 때
-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
- 4.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제6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공제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8.5.18.]

제7조(사용권의 양도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하지 못한다.

- ② 상속 받은 자의 사용기간(갱신요구권 기간을 포함한다.)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업종 및 설비 내역을 변경하였을 때
-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 3. 상품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시장의 오손 및 시장질서 유지상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 4.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5. 사용허가 후 1월 이내에 영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상 계속 휴업한 때
- 6.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거나 영업상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 7. 점포나 장옥을 사용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때
- 8. 그 밖에 군수가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3 장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 사용 일수가 16일 이상일 때에는 기준액의 전액을, 15일 이하 일 때에는 그 반액을 징수한다.
-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사용료 납기) 점포와 장옥의 사용료는 1년분을 선납하여야 하며, 노점과 노상의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일에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5.9.25.>

1. 천재지변이나 시설현대화 사업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해지를 신고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된 다음날부터 남은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으로 한다. <개정 2015.9.25.>
-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장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시장 사용자가 허가 없이 시장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제 4 장 위탁관리

제13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시장번영회 등), 단체 또는 개인을 시장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②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징수자는 노점과 노상의 시장 관리인이 된다.
- ③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관리인의 책무) 시장관리인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질서 확립과 환경 및 시설 개선지도
2.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지도
3.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 수행
4. 관계 법령 준수 및 군수의 지시사항 이행

제15조(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관리인 지정과 위탁 관리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시장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한 때
3.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제 5 장 위탁징수

제16조(노점사용료 위탁징수)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점과 노상 사용료를 법인(시장번영회 등),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탁징수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번영회와 수의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일반경쟁입찰로 결정할 때는 최고낙찰자로 한다.
- ③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징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7조(계약보증금 및 보증인)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 시 보증금을 분할납부할 경우 계약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2081>

- ② 제1항의 보증금을 예치하지 못 할 경우에는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2081>

제18조(수탁징수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하동군내 주민이 아닌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개정 2017.12.8.>
5.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수탁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
- 2. 위·수탁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 6 장 보 칙

제20조(지시감독) 군수는 시장관리인이나 수탁징수자에게 시장 관리나 시장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유지관리) 군수는 시장의 운영합리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 상인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시장변영 회로 하여금 시장내의 청결 질서 유지를 위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2조(변상금) 군수의 허가없이 시장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삭제 2017.12.8.>

제24조(청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8조에 의한 시장 사용 허가의 취소·정지
- 2. 제19조에 의한 위탁징수 계약의 해지

제25조(준용) 시장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래 시행중이던 시장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붙임 2**

**관련법령(발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意的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상인조직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청소 및 방법 활동
-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상인 및 건축물·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9 - 1102호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 공유재산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생략 규정 삭제(위임범위 일탈)

-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하여 심의생략 규정 삭제  
(안 제4조 제2항 제4호)

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개정(위임범위 일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에 맞도록 개정
  -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
  - 건물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과 부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 합산

(안 제30조 제1항 ~ 제5항)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하동군수 (참조: 재정관리과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방법 : 별지서식으로 따라 전화우편·FAX 등 제출

다. 제출기관 : 하동군수

- 주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 전화 : 055-880-2302 / FAX 055-880-227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일부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하동군”으로 한다.

제3조제8항 단서 중 “하동군”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제30조제1항 중 “건물의”를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토지”를 “부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부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을 구하는 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사람의 건물 전용면적) ÷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사람의 건물면적(전용 · 공용면적의 합계)] ÷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u>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하동군</u>----- ----- ----- ----- ----- ----- -----.</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⑦ (생략) ⑧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시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u>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u>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u> ----- -----.</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 의 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u>영</u>”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3. (생략)</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 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3. (현행과 같음)</p>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삭 제>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 -----  
-----  
-----.

② -----  
-----  
----- 부지 -----  
-----  
-----  
-----  
-----  
-----  
-----  
-----.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부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을 구하는 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물의 공용면적 :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사람의 건물 전용면적) ÷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 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 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

2. 부지의 공용면적 :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사람의 건물면적(전용 · 공용면적의 합계)] ÷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  
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  
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  
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  
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  
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19 - 1103호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공유재산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정평가 의뢰대상 확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7조 제1항, 같은 조 제5항, 제31조 제2항 및 제78조 제3항
-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시행규칙 안 제18조 제2항)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하동군수 (참조: 재정관리과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방법 : 별지서식으로 따라 전화우편·FAX 등 제출

다. 제출기관 : 하동군수

- 주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 전화 : 055-880-2302 / FAX 055-880-227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일부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조례”를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 ----- --.</p>
<p>제11조(은닉 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u>조례</u> 제63조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p>	<p>제11조(은닉 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p>
<p>제18조(가격평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u>감정평가법인의</u>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p>	<p>제18조(가격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감정평가업자</u> ----- ----- -----.</p>

하동군 화개면 공고 제2019 - 26호

## 화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2019. 10. 01.

### [화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규정]

-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민간자원 활용으로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화개면 복지 공동체인 『화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함에 따라
-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자치활동을 강화하고자 운영을 규정하고자 함

### I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인권증진의 책임)
-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 II | 목 적

복지사각지대(위기가정) 상시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화개면에 설치하는 화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III | 구성 및 직무

- 명 칭 : “하동군 화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
  - 행정 (2), 사회단체장(약간명), 민간(추천 또는 신청자)
  - 위 원 장 : 공공(면장)·민간(호선) 공동

○ 임 기

- 2년(연임 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남은기간으로 한다.

○ 구성원 자격

1. 주민서비스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개인
2.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개인
3. 주민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종교계) 또는 개인
4.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기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자문·조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으로 자문위원을 구성 할 수 있으며,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고 자문 위원 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 공동위원장의 직무

1. 공공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 한다.
2. 민간위원장은 위원의 신규 위촉 및 해촉 대상자를 면장에게 추천 할 수 있다.

○ 위원의 직무

1.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발굴에 최우선 추진
2. 위기 및 취약계층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을 위한 서비스 연계와 지원
3. 기부와 자원봉사 적극 발굴로 복지서비스 인프라 강화 및 구축
4.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인적·물적 복지자원 발굴
5. 수요와 공급의 연계를 위한 사회복지전문가, 협의체 위원 및



면 사회복지담당자 솔루션회의 참여

6. 그 밖의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 위촉 및 해촉

- 위 촉 : 공모 및 추천을 통해 면장이 위촉
- 해 촉 :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 기 타

- 위원장은 공공·민간위원장 2인으로 구성한다.
- 공공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면장이 되고, 민간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면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이장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필 수 요 건

- 복지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개인
- 위원 구성시 가급적 유관기관 단체원과 중복 지양
-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존 단체와 차별화된 자원과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

○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

- 면협의체 자체해결이 곤란한 사항은 군협의체와 협의
- 면의 각종 자원(봉사자 등)은 D/B를 통해 상호 협력
- 군협의체와 면협의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도모

IV 회의 및 회의록

○ 회의 및 의사

1. 공공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1/3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정례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임시회를 개최 하도록 한다.

3. 지역복지 공동사업과 결연사업 추진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의결한다.

4. 시급성을 요하는 사례관리는 관련위원 중심으로 수시 솔루션 회의를 개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 하여 처리하고 추후 본회의에 보고 한다.

○ 회의록

1.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 하여야 한다.

-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명단
- 회의내용 또는 상정안건
- 회의결과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다음 회의 개최시 위원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 비밀준수

1. 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될 시 주 사례관리자를 지정하고 주사례 관리자 이외에는 해당 대상자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여 개인정보가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사례관리 회의시 사용하는 회의자료에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지원대상 가정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후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 한다.

○ 이외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9 - 1065호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하 동 군 수

###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내용

저수지명	위 치	규모				관리자	해제 사유	비고
		총저수량 (천m <sup>3</sup> )	길이 (m)	높이 (m)	수혜면적 (ha)			
화정독골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640-1 일원	9.25	110	8	7.6	하동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	
하락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637 일원	30.66	75	15	1.5	하동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	

2. 저수지 관리기관 :경상남도 하동군(건설교통과 농업기반 055-880  
-2512~5)

하동군 공고 제2019 - 1076호

## 내수면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안)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한 어장에 대하여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 하 동 군 수

□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품종	어 장 위 치	면 적 (㎡)	면허일자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 고
하동공동 제5호	공동어업 (바닥식)	바닥식	재첩	고전면 신월리 황천강 지선	33,000	2019.10.02	2019.10.07 2024.09.03	화*어업계 계장 김*기	신규
하동양식 제27호	양식어업	바닥식	재첩	고전면 신월리 황천강 지선	10,000	2019.10.02	2019.10.07 2024.09.03	손*민	하동양식 제1호 재개발

□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시설물은 본인 부담으로 철거 하여야함.

하동군 고시 제2019 - 1079 호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08일

## 하 동 군 수 (인)

- 1. 목 적 :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2.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대상지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관리자	지정사유	비 고
		구역 면적 (㎡)	총저수량 (㎥)	제당 높이			
마량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232-1	65,000	2,940	3.0	하동 군수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 3.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10. 08. ~ 10. 21.(14일간)
- 4.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  
고의 대상)

6.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편 : (우)52333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 전화 : 055) 880-2514

· 팩스 : 055) 880-25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하동군 공고 제2019-1092호

##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4차)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19년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실시 하오니 희망하시는 차량소유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4.  
하 동 군 수

### 1 사업개요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신청기간 : 2019. 10. 14.(월) ~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물량 : 196,736천원, 122대분(예산범위내)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가능
- 신청방법 : 군청 환경보호과  
- 보조금 지원대상 조건 충족 시 접수 우선순위로 선정

####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 신청기간 : 2019. 10. 14.(월) 09:00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물량 : 8,000천원, 2대분
- 지원금액 : 4,000천원/대(정액지원)
- 신청방법 : 군청 환경보호과  
- 보조금 지원대상 조건 충족 시 접수 우선순위로 선정

○ 지원대상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사업자

※ 2018~2019년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 수령자 해당

□ 조기폐차 지원 기준

○ 조기폐차 신청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5등급 확인방법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조회(<http://emissiongrade.mecar.or.kr/>)
- 콜센터(1833-7435) 안내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 신청일 현재 하동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5.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6.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7.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 지원 금액 및 산정 기준

1.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지원율에 따라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 신차구입비 추가지원

- ①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휘발유,가스차) 구 매시 구매 지원금 200% 추가 지원
  - ②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차량('19.1.1일 이후 출고차량) 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
3.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0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4.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지원율 10%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5.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6. 생계형 차량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신청 전 1개월 이내 발급)를 첨부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 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수급자인 경우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 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 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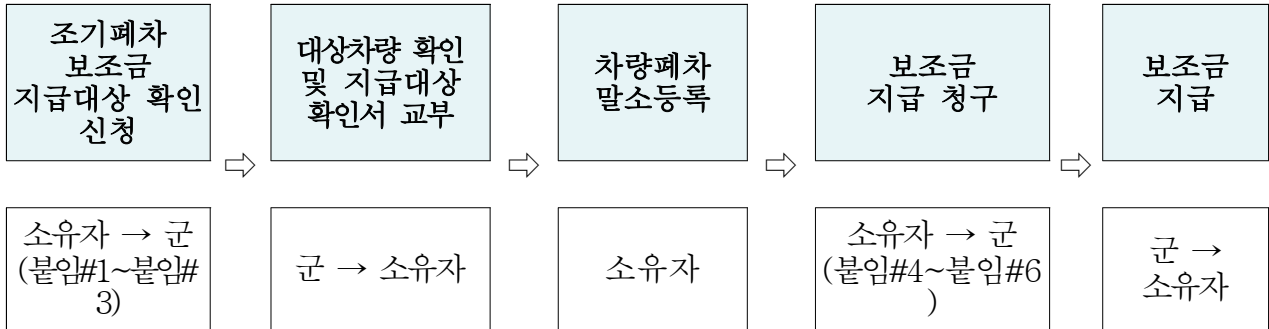
구 분	상한액 (기본+ 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5,500cc 초과 7,500cc 이하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

#### ○ 조기폐차 신청시 구비서류

- ① [붙임1]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②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③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 ④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⑤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실시한 관능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1부
- ⑥ [붙임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단, 대리 접수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제출
  - \* 차량소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 소유자중 1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또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
  - \* 법인소유인 경우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및 신청자 신분증 사본 제출
- ⑦ 차량 사진 4매 (앞뒤·좌우)

#### 【유의사항】

조기폐차제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  
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노  
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로 확정 전에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 (선정 후 보조금 청구시)

- ① [붙임5]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② 자동차말소증빙서류(말소증명서)
- ③ 소유자 통장 사본
- ④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하동군 발행분)

**【유의사항】** 보조금 신청은 폐차 완료 후 상기서류 구비하여 확정통보 후 1개월 이내까지 환경보호과 방문 접수(기간 이후 폐차 및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3.5톤이상차량 폐차후 동등이하 신차 구입 지원

○ 3.5t 이상차량 폐차후 신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 ① [붙임6]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
- ③ 소유자 통장 사본
- ④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하동군 발행분)차량

**【지원대상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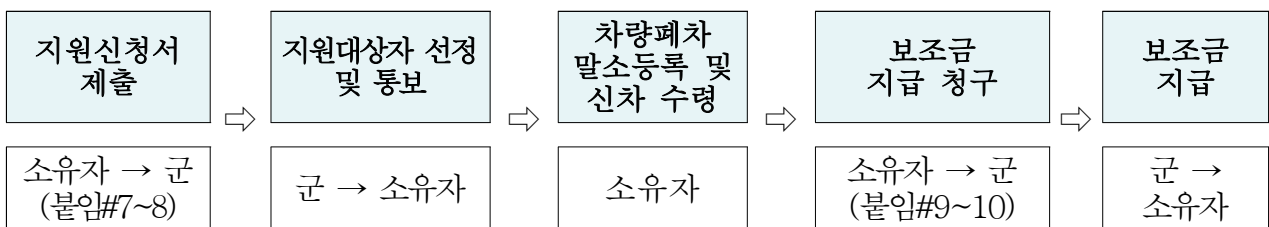
-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휘발유,가스차) 구매시
-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차량(19.1.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

**【유의사항】**

- 보조금 신청은 군에서 발급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기간이후 제출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LPG 화물차 신차 구입

○ LPG 화물차 신차 보조금 지급 절차



○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

- ① (공통서류) [붙임7]사업 지원신청서 1부, 자동차 등록증 사본,

[붙임8]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우선순위 증빙서류

- ② (법인인 경우)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③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공통서류,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선정 후 보조금 청구시)

- ① (공통서류) [붙임9]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붙임10]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자동차 말소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LPG차),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② (법인인 경우) 공통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③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공통서류, 인감증명서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붙임11]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지원대상자 취소 ◀

- 신차구매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조기폐차 지원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5톤이상 신차 구입 :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기타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및 「‘19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문의

- 전화 : 하동군 환경보호과 조기폐차 담당자(☎055-880-2564)

[붙임1] 신청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input type="checkbox"/> 연식( )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 )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		
신차구매 여부(3.5톤 이상 및 도로용 건설기계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p>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인)</p>				
<b>하동군수 귀하</b>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붙임2]

#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_\_\_\_\_는(은) 수입자\_\_\_\_\_에게  
 차량번호\_\_\_\_\_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1. 인감(법인)증명서 1부.

2. 수입자 신분증 사본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법인)도장



[붙임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 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 하동군수 귀중

[붙임4]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확인번호	<b>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b>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 동 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input type="checkbox"/> 연식( )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 )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 )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input type="checkbox"/> 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 가액	기본	원 (W )		
		추가	원 (W )		
<p>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하동군수 (인)</b></p>					
<p>※ 참고사항</p> <p>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b>확인서 수령 후 폐차완료하고, 확정통보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b></p> <p>2.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붙임6]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신설>

확인번호	<b>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b>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input type="checkbox"/> 연식(     )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     )CC <input type="checkbox"/> 용도: (     )		
		<input type="checkbox"/> 차명 :		<input type="checkbox"/> 정원(승합) :     명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     )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p>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하동군수 귀하</b></p>				
<p>※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li> <li>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li> <li>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li> </ol>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붙임8]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제공) 환경부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인)









하동군 공고 제2019 - 1109호

## 지적재조사 읍원지구 실시계획 공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 하 동 군 수

- 1. 사 업 명 :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읍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2. 사업위치 :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476-11번지 일원
-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4.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 5. 사업기간 : 2020. 1. ~ 2021. 12.
- 6.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가. 관계서류 :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읍원지구」 실시계획

나. 열람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 7.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하동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민원과(☎055-880-20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 문 : 하동군청 민원과

나. 전 화 : 055-880-2083

다. 팩 스 : 055-880-2078

라. 우 편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지적제조사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①사업명				
②사업위치				
③사업시행자				
④의견제출자	성 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⑤의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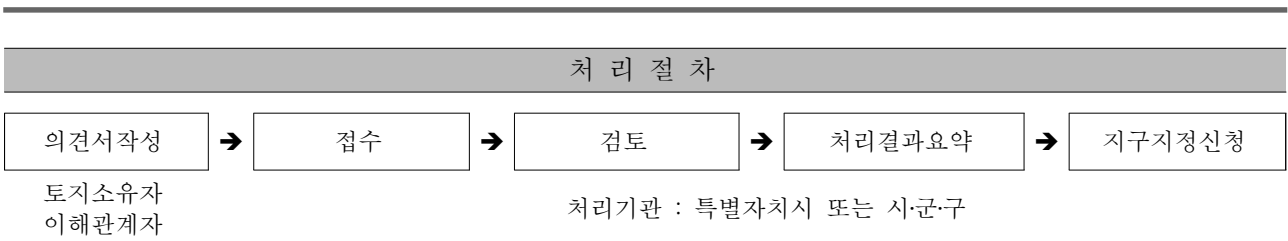
「지적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 하 동 군 수 귀하



210mm×297mm [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하동군 공고 제 2019 - 1110 호

## 지적재조사 목도지구 실시계획 변경 공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 하 동 군 수

- 1. 사업명 :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목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2. 사업위치 :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391번지 일원
- 3. 변경내용 : 사업량(필지수 및 면적)

지구명	구분	필지수	면적(m <sup>2</sup> )	비고
목도지구	당초	121	56,035	필지수 추가
	변경	348	240,942	

-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5.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 6. 사업기간 : 2020. 1. ~ 2021. 12.
- 7.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 가. 관계서류 :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목도지구」 실시계획 변경
  - 나. 열람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 8.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하동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민원과(☎055-880-20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방 문 : 하동군청 민원과
- 나. 전 화 : 055-880-2083
- 다. 팩 스 : 055-880-2078
- 라. 우 편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지적재조사사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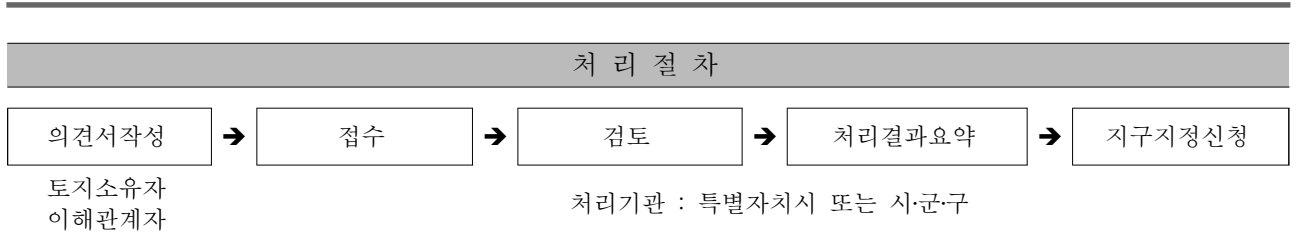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시		
①사업명				
②사업위치				
③사업시행자				
④의견제출자	성 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⑤의견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